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합40597 판결 [주식 매매대금 청구의 소]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변론종결 후 사임)

담당변호사 김주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변론종결 후 선임)

담당변호사 배현미, 김성민, 윤준섭

변론종결 후 사임) 담당변호사 김주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변론종결 후 선임) 담당변호사  
배현미, 김성민, 윤준섭 변론 종결 2018. 10. 25.

판결 선고 2019. 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중 399,997,000원에 대하여 2017. 7. 15.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9,997,000원 및 그중 199,998,5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6.부터, 199,998,5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3.부터 각 2017. 7. 14.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6. 및 2012. 1. 13. 2차례에 걸쳐 음악 관련 정보 및 기술개발등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가 2016. 3. 29.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이하 'C'라 한다) 및 C의 대표이자 당시 대주주였던 피고와 C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우선주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우선주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이 정한 내용에 따라 1주당 인수가격을 6,500원으로 하여 2011. 6. 17. C가 발행한 기명식 상환전환 우선주 30,769주를, 2012. 1. 13. 같은 우선주 30,769주를 각각 인수하고 주식대금(각 199,998,500원)을 납입하였다(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인수계약 중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투자자'는 원고를, '투자기업'은 C를, '이해관계인'은 피고를 말한다).

제4장 계약불이행 시의 조치

제36조(주식매수청구)

(1) 투자자는 투자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본 계약에 의해 인수한 주식(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포함)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연대하여 투자자의 청구에 즉시 응하고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4. 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 간 및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과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투자기업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2) 본 조에 의한 주식매수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10.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를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11.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주식매수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된 주식의 수량 및 투자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장소 또는 은행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2. 만약 30일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투자자,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31일째 되는 날에는 청구된 주식의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고 투자자가 매매 관련 후속 조치를 밟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3) 투자자,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본 조에 의한 주식매수청구대금 산정을 다음 1 내지 3의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하기로 합의하나(단, 우선주 발행일부터 상환기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 상호간에 금액이 합의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우선하여 채택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1. 투자자의 투자원금 및 동 금액에 대해 투자일로부터 최종 상환일까지 연 복리 8%를 적용해 산출된 이자금액의 합계

4. 정해진 기한 내에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그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9%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매매대금에 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라. C는 'E'이라는 스마트 노래방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5. 9. 3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와 사업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과 함께 위 시스템을 이용한 노래방 서비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해왔다.

마. 그런데 C는 2017년 2월경 회사의 운영자금이 고갈되고 2017. 5. 10. 직원들이 급여 연체 등을 이유로 일괄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제휴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F은 2017. 5. 25. C에게 2017. 6. 1.까지 업무를 정상화해줄 것을 통보하였고 이후 C의 요청으로 그 이행기한을 2017. 6. 8.까지 한 차례 연장해주었으나, C는 위 연장된 기한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F은 2017. 6. 9. C에게 이 사건 사업제휴계약의 부속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기술 일체를 이관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C로부터 이를 모두 이관 받았다.

바. 원고는 2017. 6. 14. 피고 및 C에게 위와 같이 C가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이 F과의 분쟁 등으로 사실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인수계약 제36조에 따라 원고가 위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수할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 내지 22, 24, 25호증, 을 제2, 4, 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C의 이 사건 사업제휴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모두 이관해감으로써 C는 주력사업으로 영위해오던 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위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이 사건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규정에 따른 원고의 2017. 6. 14.자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2017. 7. 14.까지 원고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수계약 제36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7. 7. 15.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주식에 관한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2. 10. C의 주식을 추가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었으므로 당초 C의 대주주로서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그때부터 더 이상 주식매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이해관계인'이라 해석할 수 없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수계약 제2조 제1항은 투자 당시, 즉 계약체결 당시 C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피고를 '이해관계인'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위 인수계약 제36조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에도 피고가 C의 대주주 지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계약상 근거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범위

1) 이 사건 인수계약 제3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대금은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투자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 연 복리 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된다(위 제3항에 의하면 제1 내지 3호의 금액 중 높은 금액을 대금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원고는 제1호에 따른 금액만 주장하고 있다). 다만 원고는 계산의 편의상 이자를 복리가 아닌 단리를 적용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주식매매대금은 일단 아래와 같이 585,244,925원이 된다.

1차 인수주식에 대한 대금 :  $297,225,168\text{원} = \text{투자원금 } 199,998,500\text{원} + 199,998,500\text{원} \times \text{투자일인 } 2011. 6. 17. (\text{원고는 } 2011. 6. 16. \text{이라고 주장하나 인수계약제11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의하면 인수대금 납입일은 } 2011. 6. 17. \text{이다}) \text{부터 주식매수청구일로부터 } 30\text{일이 되는 } 2017. 7. 14. \text{까지의 } (6 + 28/365)\text{년} \times 0.08, \text{ 원 미만 버림}$

2차 인수주식에 대한 대금 :  $288,019,757\text{원} = \text{투자원금 } 199,998,500\text{원} + 199,998,500\text{원} \times \text{투자일인 } 2012. 1. 13. \text{부터 주식매수청구일로부터 } 30\text{일이 되는 } 2017.$

#### 7. 14.까지의 $(5 + 183/365)\text{년} \times 0.08, \text{ 원 미만 버림}$

○ 총 주식매매대금 :  $585,244,925\text{원} = 297,225,168\text{원} + 288,019,757\text{원}$

2) 다만 이 사건 인수계약 제36조는 '주식매매의 성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① 위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은 계약상대방인 피고 등의 일정한 위반행위를 그 발생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인수계약에 따라 신주인수방식으로 투자를 한 투자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의 성패에 따른 위험성을 감수하여야 하는데 위 주식매수청구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뿐만 아니라 높은 이율의 이자까지 확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점, ③ 위 규정은 위 인수계약 중 '제4장 계약불이행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부분에 위치해 있고 위 규정 외에는 피고 등의 계약위반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약정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그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⑦ 피고는 C의 대표로서 이 사건 인수계약 이후부터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다 해온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피고가 의도적으로 회사경영을 방만히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ㄴ 이 사건 인수계약 제36조는 그 주식매수청구 사유의 발생시기와 그 행사시기에 관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는 언제라도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필요한 시기에 투자원금 및 투자일로부터 산정한 고율의 이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원고에게 매우 유리하고, 피고로서는 중소기업인 C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다소 불리한 내용의 계약도 감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t 실제로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시기는 투자일로부터 무려 5, 6년이 지난 시점으로 가산되는 이자액만 해도 상당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율도 19%로 상당히 높으며, 회사의 경영 상태에 비추어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얻는 이익은 이 사건 사업의 무산으로 인하여 비로소 입게 되는 원고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높다고 보인다.

리 원고는 위 인수계약 이후 C의 이사로 등재되고 2016년경부터는 이사회 의장의 직함도 사용하면서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를 넘어 회사의 회계·자금관리 등 경영행위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여 사업실패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피고에게만 묻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산정된 주식매매대금(위약금) 액수는, 투자원금에 가산되는 이자의 이율이 그 자체로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렵고 또 원고가 복리가 아닌단리로 그 이자를 산정하여 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라도,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그 70% 정도인 4억 원으로 감액하여 인정한다.

####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그중 원고가 구하는 399,997,000원에 대하여 상환일다음날인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인수계약 제36조 제3항 제4호가 정한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식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주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위 인수계약 조항이 이러한 동시이행관계를 배제하고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선이 행의무로 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이 발행되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주권 미발행 주식은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의하므로, 위 주식에 관한 매매 성립, 즉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그 주식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C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 통지를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통지도 한 것으로 볼 수있어서 원고는 위 통지에서 기한으로 정한 30일이 도과한 시점에 위 주식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주주평등원칙 위반 주장

##### 1) 피고 주장의 요지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이 사건 인수계약 제36조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자자본의 회수와 이자의 지급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에 기초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 판단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하여 투자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해당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인수계약 제36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한 피고 등의 일정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 투자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C나 피고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규정이 원고에 대한 투자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라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를 다른 주주보다 우대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무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주와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인데,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C의 계약상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고 회사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그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장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두고 회사가 그 투자자에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 부분까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신의칙 위반 주장

###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 이후 2013. 12. 10. C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여 C의 대주주가 되었고 그 후로는 원고가 모든 업무집행을 지시하고 감독함으로써 C의 경영권이 사실상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원고는 그 후로도 지분을 계속 확보하여 2016. 3. 16. 54.27%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도 C를 대표하여 C의 경영을 책임졌다. 반면 피고는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았을 뿐이고 C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된 것도 원고의 잘못이다. 이처럼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위 사업의 추진을 불가능하게 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물어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여서 허용될 수 없다.

### 2) 판단

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그 각 증거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주식매매대금의 산정에 있어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70%로 감액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 제3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권리행사라고 인정할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 이후 투자자로서 C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C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로부터 그 보유 주식이나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원고의 투자 이후로도 C는 직원 급여를 연체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사업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추가 자금 조달을 요구하자 원고는 기존에 투입된 투자금의 손실을 막기 위해 거액의 투자를 다시 하게 된 것일 뿐 직접 C의 경영권을 행사할 의도로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이 아니다.

③ 이 사건 인수계약 제22조 내지 제25조(별지 참조)에서는 원고가 투자자로서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전 동의 내지 협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권리 등을 부여하고 있고 원고가 그 권리를 남용하여 피고의 정당한 경영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원고가 C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게 된 후로도 계속해서 C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의 대표로서 투자유치 등 대외활동을 하고 회사의 내부서류에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해왔으며 직원들의 급여나 퇴사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C의 경영에서 사실상 배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로 회계·자금관리 업무 등에 관여했다는 정도이고, C의 사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도 없는 원고가 기술개발, 사업전략수립, 중요한 계약체결 등과 같은 경영업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⑥ 특히 C가 주력사업으로 영위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 사건 사업제휴계약과 그 부속약정도 피고가 주도하여 체결한 것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17년 5월 F에 C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C의 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 다. 상계 주장

### 1)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인수계약 제36조에 따라 피고에게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의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2017년 5월 F에 C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C의 이 사건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상법제403조에 따라 C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C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와 연대하여 주식매수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C의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2018. 9. 12.자 준비서면).

###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C는 2017년 2월부터 재정상황의 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졌고 이에 직원들이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제휴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그에 관한 선관주의의무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발생과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상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우라옥, 판사 홍예연, 판사 이기웅

## 별지

## 제22조(사전동의사항)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각 사항의 시행 일로부터 20일 이전에 "투자자"에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투자기업"이 합병, 감자,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투자기업"이 유무상 증자, 주식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포함)를 발행하는 등 남임자본 변경의 경우
3.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 및 소유자본 감소에 대한 사항
4. "투자기업"이 "투자자"의 최종 권환가격 보다 저가로 유상증자를 실시 하거나 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5. "투자기업"이 제 3자에게 대한 법인 연대 인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
6. "투자기업"이 대표이사를 변경할 경우
7. CP3사업여외의 신규 사업분야 진출 관련 추진 및 계약 체결
8. 자회사, 관계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5]억원 이상의 투자 (본 조에서 관계회사라 함은 "투자기업"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 지배되거나 공동 지배 하에 있는 개인/법인 및 그 임직원들 말하며, 법인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원을 파견한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
9. [5]억원 이상의 관계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자금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증
10. 건당 금 [1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누계액에 기준 금[20]억원 이상의 경상활동 관련 소유자산 및 중요 고정자산 매각, 대체, 처분
11. 건당 금 [1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누계액 기준 금[20]억원 이상의 동산, 부동산과 그 수입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지당권, 질권 혹은 기타 담보권의 설정
12. 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 그리고 인수, 합병, 분할, 법인설립, 출자, 화의, 회사정리 절차, 파산신청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13. 금융기관 여외의 자로부터의 자금 차입
14. 계획사업의 목적 또는 내용변경 (계획사업의 이동 및 용도변경 포함) 및 취소
15. "투자기업"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시
16. 외부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7. 경영의 변경 및 수권자본금의 변경
18. 기술의 양도, 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19. 자회사 신설

## 제23조(사전동의사항)

"투자기업"은 경영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투자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도 즉시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상업무 활동 여외에 중요한 소유자산의 매각, 임대, 대체, 기타 방법으로의 처분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10]억원 이상, 연간 누계 [20]억원 이상의 차입
3. 주주총회 및 이사회 안건

4. 잉여금 처분 및 실권주의 배정
5.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소유한 주주의 주식 내용 및 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경상 업무를 영외에 소유자산의 매각, 임대, 대체, 기타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7.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 간의 내부자 거래
8. "투자기업"과 "투자기업"의 이사 또는 이사와 소액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
9. "투자기업"의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0. 기업공개 시 주가사의 선정

#### 제24조(보고 및 자료제출)

(1) "투자기업"은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재산상의 주요 변동사항
  - 가) 중요 고정자산의 취득
  - 나) 중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
  - 다)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금지된 때
3.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금지된 때
4.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5. 발행 기타 규범위반으로 인하여 정부관계기관 및 기타 단체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중요 사업계획의 수행에 따른 계약 체결
7. 영업과 관련된 주요 설비 투자
8. 기타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보고하거나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보고
  - 가. 사업계획서 및 차기 회계 연도 추경재무제표
  - 나. 결산 재무제표(공인회계사 감사 말) 및 사업실적 보고서
2. 반기보고
  - 가. 반기 재무제표
  - 나. 사업 또는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 다. 법인등기부등본 (년 2회: 6월말, 12월말 제출)
3. 분기보고
  - 가. 분기별 매출 및 손익 집계 상황

나. 분기 현재 수주 상황 등 주요 경영 현황

다. 주주명부 (년 2회: 6월말, 12월말 제출)

라. 분기별 자금수급 상황

#### 4. 수시보고

가. 법인등기부등본 (변동사항 발생 즉시)

나. 주주명부 (변동사항 발생 즉시)

다. 기타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영현안

(3) 본 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되어 "투자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1), (2)항의 보고서 제출지연 또는 미제출시에는 제29조에 의거 직권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5조(회계 및 업무감사)

(1) "투자기업"은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 이후 "투자자"와 협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들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투자기업"은 회계법인 변경 시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3) "투자자"는 "투자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투자기업"의 회계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은 감사자료의 제공 등 감사의 실시에 따른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조 제(3)항 의하여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비용은 "투자기업"이 부담한다.

(5) 단, "투자자"의 내부목적으로 투자자금이 투자접함 후 1년 이내에 제19조에 기재된 사용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자자"가 지명한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목적으로 실행되는 감사비용은 "투자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끝.